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4서식] <신설 2017. 6. 15.>

구직등록 확인증

등록기관명	
구직등록번호	
성명	
발급 담당자	
연락처	
구직등록 유효기간	

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직업안정기관명

※ 정확한 구직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취업을 하거나 구직신청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